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김동윤 의원 (찬성자 27명)

나. 의안번호 : 제 2208 호

다. 발의일자 : 2017. 10. 31.

라. 회부일자 : 2017. 11. 1.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조 제목을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치시킴.(안 제6조)

나.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
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대상 사유서 별첨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표]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p>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p> <p>1.~2.(생략)</p> <p>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u>공사로서</u>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계약) ① -----</p> <p>----- 계약할 수 --.</p> <p>1.~2.(현행과 같음)</p> <p>3. -----</p> <p>-----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p> <p>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p> <p>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p>

- 안 제6조의 조 제목을 “건설공사의 분할발주”에서 “건설공사의 분할계약”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본문 중 “발주”를 “계약”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는 인용조항인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통일시키려는 것이며,
- 안 제6조제1항제3호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공사를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와 부합하게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 ④ (생략)